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20

발의연월일: 2024. 10. 16.

발 의 자:김대식·곽규택·김기현

고동진 • 주진우 • 박성훈

김민전 · 김예지 · 백종헌

서지영 · 조경태 · 박성민

정성국 · 조정훈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창에 제6호를 다음과 다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한다.

6. 해당 사업장,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산업별 협의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033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을 삭제하고,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u>사내대학형태의</u> 평생교육	제32조(<u>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u>
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평생교육시설) ①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u>전문대학</u>	<u>전문대학·</u>
<u>또는 대학</u> 졸업자와 동등한 학	대학 또는 대학원(「고등교육
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	<u>학을 포함한다)</u>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u>	② <u>사내대학·대학원</u>
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	<u>형태의</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_ <신 설>	6. 해당 사업장, 산업단지 기업
	연합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산
	업별 협의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③ 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u>	③ <u>사내대학·</u>
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u>대학원형태의</u>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	

주;	가 부담히	하는 경	것을	원칙으로
한1	구.			
4	제1항에	따른	사내	대학형태

- ④ 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u> 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u>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u>사내대학·대</u>
<u>학원형태의</u>	
	•
	· <u>사내대학 •</u>
	<u>사내대학 •</u>
5	<u>사내대학 •</u>
5	<u>사내대학 •</u>
5	<u>사내대학 •</u>